

# 대선 중립 선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

정치와 신문 만평 : 표현의 자유와 한계

**저**널리즘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의 하나가 바로 신문 만평이며 이는 풍자와 은유의 방법을 통하여 정치적 영역에서 의제설정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러한 이유로 만평은 '제2의 사실' 또는 '글 없는 사실'이라고 한다. 나아가 만평은 정치인들에게는 정치적 생명을 결정하는 '벌의 침'으로 인식되어 왔다. 만평이 이처럼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표현이 자유로워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

과연 신문의 만평은 어느 정도의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최근 이러한 의문을 제기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3월 13일 대한매일에 만평을 그리고 있는 백무현 화백(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회장)이 중앙일보의 김상택 화백의 만평(그림1)에 대해서 인터넷 뉴스 '오마이 뉴스'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비판의 글을 띄웠으며, 이로 인해 신문 만평이 다시 한번 도마위에 올랐다.

문제가 된 만평에서는 경기도 동창회가 학교 앞 갈비집에서 김근태의 무릎을 꿇려놓고 "학교 망신이다. 사퇴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홀에 있는 손님이 보는 신문에는 "1등 노무현 상고 졸(卒), 꼴찌 김근태 경기도 졸(卒)"이라고 적혀있다.

여기에 대해 백 화백은 위협을 무릎쓰고 단행한 김근태의 양심선언의 의미를 왜곡하고 고교출신의 대결로 폄하해버리는 소위 폭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백 화백은 "이 만평은 시사만평가가 진실을 얼마나 그릇되게 왜곡하고 거짓 말을 유포할 수 있는지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 빼어난 작품"이라고 평했다. 이러한 백 화백의 글이 인터넷에 오르자 많은 독자들이 공감하는 글을 올려 김 화백의 학벌지상주의적 의식을 비판하는 등의 반향이 있었다. 만평은 만평일 뿐 그 이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대단히 적었다.

이재진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어떠한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만평을 그리는 작가들에 달려 있다.  
 중앙일보의 경우 얼마 전 홍석헌 회장이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는  
 점에서 김 화백의 만평은 중립선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비록 공론화 되지는 않았지만 이전에도 만평에 대한 유사한 비판과 논의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사건은 백화백이 비판의 화포를 열지 않았다면 그저 그러려니 하고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안이었다. 즉, 만평의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는 작가의 개인적 정치성향의 표현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 중앙지의 만평 한 컷이 사람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이를 통해 대중들의 여론을 형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하겠다.

즉, 신문의 만평은 지역적 공감(community consensus)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주제, 내용, 그리고 표현방식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겨레는 3월 28일자 9면에서

(그림1)



중앙일보와 동아일보의 시사만화, 만평이 '민거나 말거나' 식 인신공격에 나서면서 그 풍자의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비판을 하였다.

즉, 강력한 비판과 함께 이용된 발빠기식 표현으로 일단 표현한 내용의 진실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만평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비판력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지만, 그 비판도 사안의 본질에 대한 혜안과 '아, 그렇구나' 하는 비판적 자각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하며, 무작정의 개인적 비아냥은 삼가야 한다.

### 개인적 비아냥은 삼가야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김화백 만평의 윤리적 또는 법적 문제는 무엇인가? 만평 작가는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필자는 이러한 의문들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의 신문 만평이 질적으로 한층 성숙할 수 있는 논

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어떠한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는 본질적으로 만평을 그리는 작가들에 달려 있다. 그러나 만일 작품이 작가의 소속 언론사의 분위기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면 이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중앙일보의 경우 얼마 전 홍석현 회장이 대선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는 점에서 김 화백의 만평은 중립선언을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 만평 관련 소송 3건

만평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한국의 경우 현재까지 3건의 법원판결이 있었다. 흥미롭게도 재판의 피고가 이번엔 문제가 된 김 화백이다. 대법원은 2000년 7월 28일 김인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경향신문과 김상택 화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의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였다.

이 사건은 김 전 수석이 경제환란 직후인 1997년

12월 20일자(그림2)와 1998년 1월 21일자(그림3) 경향신문 만평인 '경향만평란'에서 각각 항공권을 구입하고 출국장 한쪽에 서 있는 모습을 풍자하자 "해외도피를 모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묘사,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998년 1월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시작되었다.

원심에서 서울지법은 "...만평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풍자기법이나 내용이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하다."고 판결하였고, 항소심에서 서울고법은 만평이란 풍자의 외피를 씌우거나 은유적 표현기법을 이용하므로 이러한 풍자적 외피 또는 은유를 제거한 후, 작가가 만평을 게재한 동기, 풍자나 은유의 기법, 독자들의 지식정도, 만평의 소재가 된 객관적 상황이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만평이 독자들에게 어떠한 인상을 부여하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림2>



<그림3>



**작가 차원에서 비판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는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법적 제약보다는 바람직한 것으로, 만평의 질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드러내지 않고 한 두 컷 그림과 압축된 설명을 통해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풍자한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만평만으로 보면 원고가 해외도피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거나 독자들이 그러한 인상을 받았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만평의 자유 폭넓게 인정**

결국 한국의 법원들은 신문 만평의 경우 그 표현의 방식이 조금 과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풍자(parody)나 은유의 기법이 이용되는 저널리즘 구성요소로서 인식하면서 그 표현의 자유 정도를 넓게 인정하려는 의식을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만평의 표현 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명예감이 훼손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관계의 적시에서 비롯된 것이라기 보다는 만평의 사실과 같은 표현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국 법원의 판단을 미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어떠한가?

무엇보다, 미국의 경우 만평을 정치적 담화의 가장 중요한 양식으로 인정하고 명예훼손법상의 의견(opinion)에 버금가는 절대적 면책사유를 인정하고

있다(1970년 Yorty 대 Chandler사건). 물론 그 정도는 다르지만 한국의 경우도 사실과 같은 지위에서 만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만평의 표현은 상당히 보호되고 있다고 하겠다.

둘째, 한국이나 미국 모두 만평으로 인한 개인의 명예감정보다는 일반 독자들의 만평에 대한 인상을 중요한 명예훼손 등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법원들은 대개의 경우 만평이 본질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것이기 때문에 상식을 가진 일반적 독자들은 적시된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지 않을 것이라는 기본적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경우 단순한 풍자, 해학 등으로 정치인이나 공적 인물을 묘사하는 경우 피해 당사자들은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로부터 보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카툰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를 증명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원칙은 수용되고 있지 않다. 결국 미국의 경우 만평은 거의 절대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한국이나 미국 모두 만평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수적으로 적다는 것이다. 이는 만평이 법적으로 상당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 이외에도 작가들이 향유하는 자유만큼이나 표현을 자율적으로 적절히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한국의 경우 작가들의 내용 표현에 있어서의 문

제점이 때때로 지적되곤 한다. 일례를 들어보자. 1999년 10월 14일자 중앙일보의 만평<그림4>에서 당시 청와대 정책수석 비서관이었던 김한길의 한강변 별장 탈법건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고, 이에 김 전 수석은 반론 보도청구와 함께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림4>



공소장에서 김 전 수석은 문제의 만평은 자신 뿐만 아니라 청와대와 국민의 정부의 도덕성에 상처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사는 자신들의 기사나 만평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버티다가 곧바로 위장탈법건축은 사실과 다르다는 기사와 김 전 수석의 명예가 훼손된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했고 김 전 수석은 소송을 취하했다.

**만평 작가의 상호비판**

이러한 예는 정치인에 대한 만평에서 표현이 신중하고 정확한 증거나 기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신문 만평의 경우 그 표현의 정도는 상당히 보장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있어, 좀 더 의미 있고 꼭 알려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알리거나, 사회법익을 위해 비판의 강도를 높일 줄 아는 현명함

이 작가들에게 요구된다. 작가들이 이러한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같은 작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질책과 비난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는 비록 개인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으로 인식될 수도 있지만 법적 제약보다는 바람직한 형태의 것으로, 결과적으로 만평을 잘 아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 견제와 비판이 만평의 질

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때로는 크게 주목하지 못하고 스쳐버릴 수도 있는 만평이 우리의 인식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평의 이면에는 어떠한 구조, 압력, 분위기가 존재하며, 사안에 대한 비판의 칼날을 어떠한 방식으로 대고 있으며, 과연 제대로 된 풍자와 은유를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작가의 사실에 대한 지식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만평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필요하면 인터넷에 만평의 문제점을 지적하도록 해야 하며 작가는 이를 겸허하게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한다. 날카로운 눈을 가진 독자들이 더욱 늘어날수록 신문의 만화·만평 작가들은 스스로 경계하고 조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자율적인 경계는 언론자유 의 위축이라기 보다는, 법적 규제보다 더 안전하고 편리한 것이라는 점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신평**